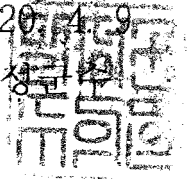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81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4. 9

제 출 자 : 달성군의회



1. 제안이유

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의 유지·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, 서원의 국내외 통합관리 및 활용 등 각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사무위탁 및 운영지원(안 제4~5조)

3. 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 4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본예산 반영(국, 시비 매칭)
- 다. 기타사항

- (1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4) 입법예고(2020. 3. 16. ~ 4. 6.) 결과 : 의견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·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”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(이하 본조에서 “서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유지·관리 및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
2. 유네스코 정기보고서(DB)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3. 서원의 국내·외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
4. 서원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
5.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군수가 서원의 유지·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사무위탁)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등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지원 등)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을 수탁자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

제19조(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) ① 문화재청장은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, 「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」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,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② (생략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·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,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